

운영규정 개요

기 관 명	성모재가복지센터	설치일자	2023. 11. 10
시설종류	재가노인복지시설	급여종류	방문요양
전화번호	042-586-8924	FAX	042-586-8924
주 소	대전 서구 도산로11, 상가108호(도마동, 효성타운아파트)		
이용대상	'65세이상의 노인' 또는 치매·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인정 받은 자		

입소계약	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.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약해지	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이 용 료	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.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	150분 이상	49,160
60분 이상	24,580	180분 이상	55,350
90분 이상	33,120	210분 이상	61,670
120분 이상	42,160	240분 이상	68,03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 (치매특별등급)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177,0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, 9%